

 신안산대학교	대학특성화 추진위원회 규정	규정 번호	4-1-17
		제정 일자	2003.09.01
		개정 일자	2021.08.20
		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명칭 및 근거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대학특성화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설치목적) 이 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구로서 대학의 특성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위원) 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특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
2. 대학 특성화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
3. 기 진행 특성화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사무처리기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신안산대학교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 <2021.08.20.개정>

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안산대학교의 교직원으로 특별작업팀을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